

청주지방법원 2022. 8. 11 선고 2021가단6557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6. 23.

판 결 선 고 2022. 8. 11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6 지분에 관하여 2019. 2. 25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위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6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. 2. 27. 접수 제234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831112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, ‘D은 원고에게 49,862,956원 및 그중 13,061,140원에 대하여 2013. 6. 18.부터 2013. 7. 26.까지는 연 19.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와 D의 부친 E이 소유하였는데, E이 1998. 4. 10. 사망하였고, 피고와 D의 모친이자 E의 배우자인 F가 2001. 9. 6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F가 2009. 11. 30. 사망하였고, 피고가 2019. 2. 27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피고와 D 등 F의 상속인들(총 6인)이 2019. 2. 25.자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작성한 사실, 위 작성일 당시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은 2019. 2. 25.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처분하여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고, 이는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, 그에 대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따라서 D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(1/6)에 관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취소되어야 하고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6 지분은 D의 명의로 회복되어야 한다.

피고는, ‘부친 E이 사망할 당시부터 상속인들 사이에 장남인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물려받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었고, 적어도 F가 사망한 2009. 11. 30. 당시에는 F의 자녀들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으므로,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였다.’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런데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갑 제2, 5,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,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가 2019. 2. 25. 전에 이미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

아니한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권노을

별지